

문서번호 : 13-03-통일위원회-02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송일자 : 2013년 3월 8일(금)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공동변호인단>은 2013. 3. 7.자로 2013고합 186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서,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과, 탈북자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중앙합동신문센터 6개월, 하나원 3개월, 최장 9개월에 이르는 기간 인신을 구금하는 행태 등에 대하여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합니다.
4.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리며,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정은 추후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 국민참여재판 신청서(2p)

2013. 3.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천낙봉 [직인생략]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1 -

<별첨1>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사 건 2013고합 186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피 고 인 유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 희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2 -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희망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¹⁾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 3. 7.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 낙 봉
장 경 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나) 귀중

1)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보1032 결정에서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할 바 있으나 기일을 준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